

의안번호	2213002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계번호	25B505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3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제2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함(제3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제4항)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 제6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 제15조의4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부금품 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실적이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비용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2	안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2. 상세 사유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안 제15조의3)

- 개정안은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¹⁾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을 수립하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록 하고,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구역에 대해 비용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서 2030년까지 20개소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계획을 명시한 바 있으나, 현재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성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실적 우수 구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대가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정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규모와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범위·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지원 (안 제15조의4)

- 개정안은 민간²⁾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을 효율적

2) 안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①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규모와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
-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참고자료]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개요(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배경

- 그간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 노정
 - － 이로 인해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생태계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관광 및 휴양, 생태복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우수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정책모델 필요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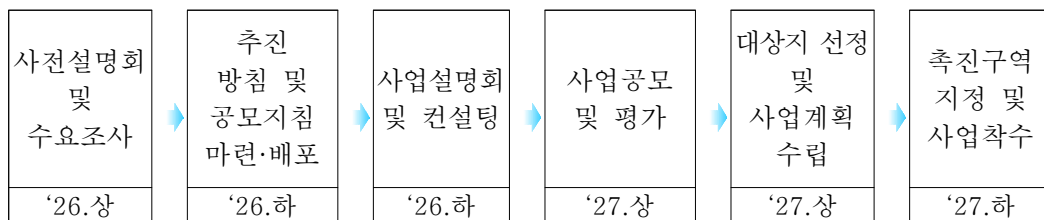
- 비전 및 목표



※ CBD COP15('22.12) : GBF 채택(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으로 '30년까지 보호지역과 OECM(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을 (현)17.8% → 30% 목표 달성 필요“

- 사업기간 : '27~계속
- 추진절차 : 공모·선정→사업계획 수립→촉진구역 지정→성과 평가→국가생태경제도시 지정→도시차원 지원 확대
- 지원예산 : 1개 구역당 4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중점사업)
- 지원대상 : 보호지역 15%이상 + 재정자립도 20%이하 시·군·구 대상 매년 4곳 공모·선발

- 사업주체 및 형태 : 직접수행(지원기구 대행), 지자체 보조 70%
- 사업 구성
 - (중점사업) 경관숲 조성, 생태복원 체험관(폐교활용), 생태힐링센터 등 생태계 보전·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환경부 연계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계복원사업 등 환경부 자연생태 프로그램 중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패키지 지원
 - (기타) 관계부처 협력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 참여사업 등
- 주요 일정



□ 기대 효과

- (글로벌 협약 이행)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보호·복원지역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GBF 목표 달성 및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탐방객, 휴양·치유 인프라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소비 촉진 등
- (생태계서비스 만족도 개선) 지역주민의 생태계서비스 제공수준을 높임으로써 거주공간의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추진 절차(안)

사업단계	주요절차	주요내용
기획 단계	사업설명	- 사업 공모가이드라인 배포 (환경부) - 사업설명회 (환경부)
	공모 컨설팅	사업안내 및 컨설팅 (지원기구)
공모 단계	기본구상	- 지역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지자체) - 사업 기본구상 및 공모제안서 작성 (지자체)
	공모	- 사업접수 및 공모제안서 제출 (지자체→환경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환경부)
	공모 선정	위원회 평가 (환경부)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예산 지원 (환경부) - 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
	검토 및 지정	- 위원회 검토 및 확정 (환경부) - 촉진구역 지정 및 고시 (환경부)
	실시설계서 작성	- 사업비 지원 (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행 (지자체) - 적정성 및 기술 검토
	설계 검토	설계완료 사업(관련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을 대상으로 설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위원회 자문
시행 및 모니터링 단계	사업 착공	공사 발주 (지자체)
	사업 시행	사업경과보고 및 현장점검 (환경부, 지원기구)
	준공	- 준공검사 (지자체) - 실적보고 (지자체→환경부, 지원기구)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지자체) -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환경부, 지원기구)
	사후 평가	결과보고(지자체) 및 평가 (환경부)
사업 확대	성과 평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준공 후 3~5년 이후) (위원회)
	국가 생태경제 도시 지정 등	- 성과 평가 결과 확인 (환경부) - 도시(시군구)차원 확대 지원 (환경부)